

「IBK혁신솔루션 3호」 위탁운용사 선정계획 공고

「IBK혁신솔루션 3호」의 위탁운용사 선정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선정개요

구분	세부내용		
	IBK Partnership		Market Innovation
	Value-up	Start-up	ESG
위탁운용액	400억원	100억원	200억원
선정운용사수	2개사	2개사	2개사
출자대상투자기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한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1.10.21. 개정된 자본시장법 시행령(제21조의14)에 따라 기관전용사모집합투자기구로 신청할 경우, 본 펀드의 공동출자자(IBK기업은행)의 유한책임사원 지위에 따라 향후 투자기구 변경이 필요할 수 있음 (한국성장금융과 별도 협의) ○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기술사업투자조합 ○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벤처투자조합 등 ○ 상기와 유사한 목적의 국내 집합투자기구, 투자조합 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1.10.21. 개정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 포함) 적용 ※ 본 계획에 따라 선정된 위탁운용사가 관련법규의 개정 등으로 인하여 투자기구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 해당 투자구에 대한 운용 자격을 갖추고 있고, 본건 펀드의 운용에 불리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해 결성 전까지 신청 투자구에 대한 변경 가능 		
운용사신청자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출자대상 투자기구」의 관련법규에 따른 펀드 결성과 업무집행이 가능한 제안서 접수일 현재 설립된 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동운용(Co-GP)으로 신청한 경우, 각 운용사는 신청 자격을 충족하여야함 ○ 한국성장금융 타 출자사업으로 최종 선정된 펀드로 지원 시 사전 협의 필요 		
운용사선정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홈페이지* 공개모집 공고를 통해 출자자가 정한 절차에 따라 선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운용사, 운용인력, 펀드운용계획 등을 종합평가하여 선정 ○ IBK기업은행과 혁신금융을 실현할 수 있는 협업 방안을 제시하거나, 투융자 복합지원 연계방안 등을 제시할 경우 그 타당성 및 유효성을 판단하여 운용사 선정에 반영 * 한국성장금융 : www.kgrowth.or.kr (출자사업공고) 		
접수일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1년 12월 15일(수) 10:00~16:00 당일限 ※ 우편접수 등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접수방법 변경 시 접수일 하루 전 홈페이지에 별도 공고 예정 		
심사결과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2년 1월 중 		
펀드결성시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종 선정 후 6개월 이내 결성* * 단, 부득이한 사유 발생 시, 협의하여 3개월 이내 연장 가능 		

2. 투자대상

□ 투자대상 기업은 법인 형태의 국내 중소기업* 및 비상장 해외기업으로 투자기간 내 아래의 주목적 투자대상에 의무투자비율 이상을 투자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기업은 제외하되, 펀드의 투자를 통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기업에서 분리되는 중소기업은 투자대상에 포함

구분		주목적투자대상 및 의무투자비율
IBK Partnership	Value-u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래 ①, ② 모두를 충족하여야 함 (단, ①과 ②를 동시 충족시 각각 산정) ① IBK기업은행의 금융 및 비금융 서비스¹⁾를 제공받고 있는 기업²⁾에 총 결성금액의 70%이상 투자 ② 혁신기술기업³⁾에 투자집행금액의 80% 이상 투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투자 이후 가치제고를 위한 다양한 지원방안(시설 및 운전자금대출, 수신상품, 외환거래 등의 금융상품과 다양한 비금융 서비스)을 IBK기업은행과 협업 2) 투자 이후 제공받은 기업도 사후적으로 인정 3) 기술평가기관으로부터 받은 투자용 TCB기술등급이 상위 5등급(T15) 이상이거나,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및 '발명진흥법'에 따른 기술가치평가를 받은 기업
	Start-u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래 ①, ② 모두를 충족하여야 함 (단, ①과 ②를 동시 충족시 각각 산정) ① 창업 5년 이내의 비상장 중소·벤처기업 : 최소 결성금액의 60% 이상 ② IBK창공 입주 혹은 졸업 기업¹⁾ : IBK기업은행 출자금액의 60%(30억원) 이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펀드에서 先 투자한 기업이 IBK창공에 입주·졸업 시 사후적으로 인정
Market Innovation	ESG	<ul style="list-style-type: none"> ○ 'ESG' 투자¹⁾에 IBK기업은행 출자금액의 150%(150억원) 이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ESG투자'는 운용사가 자율적으로 정의하여 제안 ('ESG투자'의 예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글로벌 표준/이니셔티브의 지표를 활용하되, 국내 중소·벤처투자 환경을 고려하여 정의 - 투자 조건(사전/사후)으로 피투자기업 내 ESG관련 기구(위원회/조직/인력 등)를 설치하고 활용하는 경우 - 펀드 운용 전반에 관한 전문 ESG평가/자문기관의 주기적 평가/자문 활용

3. 주요 출자조건

구분	세부내용												
	IBK Partnership		Market Innovation										
	Value-up	Start-up	ESG										
최결성금액	333억원	83억원	300억원										
출자비율	약정총액의 60% 이내	약정총액의 60% 이내	약정총액의 33% 이내										
운용사 최소출자비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약정총액의 1% 이상* * LLC의 경우 운용인력이 출자하는 금액을 운용사 출자금액으로 인정 * 공동운용(Co-GP)의 경우 위탁운용사는 각 약정총액의 의무출자비율 이상 출자, 운용사 계열사의 출자금액은 의무출자비율 산정에서 제외함 * 운용사 우선손실충당 설정 의무 없음 												
존속기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펀드 결성일(성립일, 설립등기일)로부터 8년 이내* * 출자자 전원 합의 시 최대 2년 연장 가능 												
투자기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펀드 결성일(성립일, 설립등기일)로부터 4년 이내 												
납입방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시납 또는 분할납 												
관리보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펀드 결성 후 3년 이내는 약정총액 기준, 3년 이후에는 투자 잔액 기준 - 3년 이내 : 약정총액 × 기준보수율 - 3년 이후 : 투자 잔액(분기말 평잔) × 기준보수율 <p style="text-align: center;">< 결성규모 구간별 기준보수율 ></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ext-align: center;"> <thead> <tr> <th>결성규모</th> <th>200억원 이하</th> <th>200억원 초과 ~ 500억원 이하</th> <th>500억원 초과 ~ 900억원 이하</th> <th>900억원 초과</th> </tr> </thead> <tbody> <tr> <td>기준보수율</td> <td>2.4% 이내</td> <td>2.2% 이내</td> <td>2.0% 이내</td> <td>1.7% 이내</td> </tr> </tbody> </tabl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매칭 출자 시, 기존 출자자와 협의하여 관리보수율을 조정하되, 시장에서 통용되는 수준에서 결정 			결성규모	200억원 이하	200억원 초과 ~ 500억원 이하	500억원 초과 ~ 900억원 이하	900억원 초과	기준보수율	2.4% 이내	2.2% 이내	2.0% 이내	1.7% 이내
결성규모	200억원 이하	200억원 초과 ~ 500억원 이하	500억원 초과 ~ 900억원 이하	900억원 초과									
기준보수율	2.4% 이내	2.2% 이내	2.0% 이내	1.7% 이내									
성과보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준수익률* 초과이익의 20% 이내 지급 * IRR 6% 이상으로 운용사가 제안 <p>[IBK Partnership : Start-up 분야에 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IBK창공' 관련 의무투자비율(IBK기업은행 출자금액의 60%인 30억원)의 2배 이상을 IBK창공 입주 혹은 졸업 기업에 투자시 인센티브 지급 (펀드에서 先 투자한 기업이 'IBK창공'에 입주하거나 졸업시 사후적으로 인정) 												
운용인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펀드 결성규모에 따라 핵심운용인력의 수를 차등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ext-align: center;"> <thead> <tr> <th>결성 규모</th> <th>300억원 이하</th> <th>300억원 초과</th> </tr> </thead> <tbody> <tr> <td>핵심운용인력 수</td> <td>2명 이상</td> <td>3명 이상</td> </tr> </tbody> </tabl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핵심운용인력 : 투자경력* 3년 이상 경력자 2인 이상이 참여 ○ 핵심운용인력의 투자경력* 평균이 4년 이상 * 투자경력 : 제출양식을 참고하여 산출하고 입증 가능하여야함 ○ 펀드 결성 시 핵심운용인력은 규약(정관)에 기재 			결성 규모	300억원 이하	300억원 초과	핵심운용인력 수	2명 이상	3명 이상				
결성 규모	300억원 이하	300억원 초과											
핵심운용인력 수	2명 이상	3명 이상											

출 제 자 자 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출자자는 기관투자자 및 법인으로 제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 개인출자자(운용인력, 특수관계인 등)의 출자가 책임 운용강화에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한국성장금융과 협의하여 결정 ○ 한국성장금융 타 출자사업 최종 선정 위탁운영사가 지원 시 사전 협의 필요 ○ 정책금융기관* 및 해외출자자(해외출자자의 국내법인 포함)가 출자 참여하는 경우, 한국성장금융과 사전 협의 필요 <p>* 정책금융기관이란 정부·지자체·공공기관 등으로 연기금·공제회 등 민간자금 운용 관련 기관투자자는 정책기관에서 제외</p>
수 탁 회 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IBK기업은행으로 선정하되, 매칭 지원 시 기존 출자자와 협의하여 결정 ○ 펀드의 미투자자산 중 일부는 수탁계약에 따라 은행의 확정금리부 금융상품에 운용 가능 ○ 펀드자산의 관리는 수탁회사와의 업무지시서를 통해서만 가능
회 계 감 사 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성장금융이 제시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회계감사인 선정
편 드 전 자 보 고 시 스 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펀드 전자보고 시스템 사용 의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련 시스템 구축 및 사용 비용은 운용사가 부담 ○ 펀드운용 등에 대하여 한국성장금융이 지정하는 전자문서 방식으로 보고
기 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일 운용사는 「IBK Partnership」내 각 리그에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으나, 「IBK Partnership」과 「Market Innovation」간 중복 지원은 가능 ○ 미합중국의 은행지주회사법 (Bank Holding Company Act of 1956), 최종시행규정(volcker Rule Implementing Regulations) 등을 준수해야 함 ○ 결성과정에서 보수구조 등 공고 조건에 대한 조정 요청이 있을 경우, 펀드 조성목적 및 주요 출자조건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협의 가능 ○ 본 공고문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 한국성장금융과 개별 협의하여 결정

4. 선정 배제, 취소 기준

□ 선정 배제

- 법령 등의 준수와 관련하여 운용사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동 사유로 펀드의 적법한 운용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제안시점 현재 법령 위반 또는 시정 명령 미이행 상태에 있는 경우
 - 제안서 작성 기준일로부터 과거 5년 이내에 법령위반으로 관계 감독기관으로부터 기관경고 이상의 제재를 받은 바 있거나, 시정명령 이행 실적이 양호하지 않은 경우
- ※ 다만, 본 펀드 운용업무와 관련성이 적은 제재내역인 것으로 판단될 경우 선정 배제사유에서 제외 가능함
- 회사 및 펀드 운영상 도덕적 해이 또는 제3자 경유 등을 통해 사실상 법령을 위반한 상태라고 판단되는 경우

- 자산건전성이 취약하거나, 제안서 작성 기준일로부터 2년 이내 도덕적 해이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위탁운용사로서 펀드의 성실한 운용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투자업체 발굴 및 투자의사결정 등 펀드 운용과정에서 대주주 등 외부의 압력으로 위탁운용사로서 독립적 의사결정 및 업무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제안 펀드의 핵심운용인력과 운용사 대표이사가 제안서 작성 기준일로부터 5년 이내에 감독 당국으로부터 감봉 이상의 제재를 받은 경우
- 위탁운용사의 경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민·형사상 소송의 진행, 리스크관리, 컴플라이언스 등의 위험관리체계 부재, 경영권 불안정, 운용인력의 잦은 이동 등으로 펀드의 안정적 운용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한국성장금융의 운용 펀드가 출자한 펀드의 정상적인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는 중대한 의무의 불이행 행위 등을 한 위탁운용사로서 펀드의 성실한 운용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고의적 누락 또는 중대한 오류 등으로 중요한 제안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사실이 기재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 공고일 이후 위탁운용사 또는 제3자가 출자자의 선정 절차 등에 영향력을 행사하고자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위반되는 행위를 하는 경우

□ 선정 취소

- 펀드의 최소결성금액(조정된 경우 조정 후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 본 펀드의 출자조건을 위탁운용사가 수용하지 않아 규약(정관)협의 등 후속 업무를 진행할 수 없는 경우
- 위탁운용사가 타 출자자의 출자확약서를 제출하였으나, 그 사실이 허위 또는 의도적인 조작으로 밝혀지는 경우
- 위탁운용사가 법령 위반 또는 시정명령 미이행 상태이거나 기타 우회적인 방법 등으로 사실상 법령 위반 상태에 있어 펀드의 성실한 운용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위탁운용사 선정 후 결성총회까지 선정 배제 사유 또는 당해 펀드의 운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 선정 취소 발생 시, 출자자간 협의에 의해 차순위 후보자로 위탁운용사 선정 가능

5. 제재 사항 및 기타

□ 제재 사항

- 결성시한(협약에 의한 연장기간 포함) 내 펀드결성을 완료하지 못한 위탁 운용사 또는 선정이 취소된 위탁운용사에 대해서는 각각 결성시한 또는 선정이 취소된 날로부터 3년의 범위 안에서 출자 제한할 수 있음
 - 다만, 관련 법규상 제한 등의 사유로 인해 펀드결성이 지연될 경우 제재부과 대상에서 제외 가능함
- 선정된 펀드가 존속기간 중 규약(정관)상 투자 의무를 달성하지 못한 경우 해당 위탁운용사에 대해 1년 이하 출자 제한하며, 기지급된 관리보수를 환수하거나 성과보수를 미지급할 수 있음
- 선정된 운용사가 출자확약서 등의 제출에 따라 우대를 받았으나 그 사실이 허위 또는 의도적인 조작으로 밝혀지는 경우 5년 이하 출자 제한되고, 실제 출자금액이 당초 제출한 출자확약서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1년의 범위 안에서 출자 제한할 수 있음
- 출자대상 투자기구 결성일로부터 1년 경과 시점까지 최초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출자대상 투자기구를 해산할 수 있음

□ 기타

- 제안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중대한 오류 등의 허위사실 기재 시 평가대상에서 제외하며, 선정 이후에도 선정을 취소함
 - 특히, 운용사 및 운용인력의 투자실적에 대해서 고의적으로 허위, 조작하여 제출하거나 누락한 것이 밝혀지는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하고, 선정 이후에도 선정을 취소하며 확인일로부터 5년 이하 출자 제한함
- 제안서 작성기준일은 접수일 직전 분기말(**21.09.30**)로 하며, 핵심운용인력 등의 참여 인력은 접수일 현재 기준으로 함

6. 선정절차 및 일정

□ 선정 절차

- (소 분야 동일) 공고 → 제안서 접수 → 서류 심사 → 현장실사 → 제안 심사 → 최종선정

□ 선정 일정

일자	내용	비고
2021년 12월 15일(수)	제안서 접수	접수시간 : 10:00 ~ 16:00 (당일 한도)
2022년 1월 중	최종 선정 및 심사결과 발표	개별통보

* 세부 일정은 진행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7. 지원방법 및 출자 설명회

□ 지원방법

- 한국성장금융이 정하는 제출서류* 및 그 내용을 포함한 USB메모리 1개를 지정된 접수처에 접수당일 지정된 접수시간 내 퀵서비스 등으로 비대면 제출
* 제출서류 및 관련양식은 공고된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관련 양식은 출자 설명회 일자까지 별도 공지 예정)
- 제안 심사 대상으로 선정된 운용사는 별도 PT자료(8부)를 제출
- 분량 : 본문 기준 20페이지 이내 (발표 당일 PT자료, 파일 별도 지참)

□ 출자 설명회 (Online)

- 일자* : 2021년 11월 23일(화) 홈페이지 게시
* 단, 출자 설명회는 사정에 의하여 변경가능하며, 변경 시 홈페이지에 별도 공지 예정

8. 접수처 및 문의방법

- 접수처 : 한국성장금융투자운용(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2길 32 여의도파이낸스타워 5층)
- 문의방법 : 한국성장금융 LP지분투자팀 (02-2090-9174)
E-mail : hyeran@kgrowth.or.kr

2021년 11월 18일

한국성장금융투자운용(주)